

##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8기 추가 모집 공고

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·육성을 하기 위한 『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8기』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9일  
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

### 1 사업개요

#### 사업목적

- 스마트 항만물류 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유도
- 항만물류 분야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스마트 항만 기초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

**지원대상:** 대학(원) 재(휴)학생, 대학(원) 졸업한 예비창업자

**지원내용:** 창업지원금 1,000만원 이내 및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등

창업지원금	+	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
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출원,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		해상물류 창업기업 설립 및 아이템 구체화에 필요한 창업 보육 교육 실시

**협약기간:**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**선정규모:** 예비창업기업 0개사 이내

□ 모집분야

구분	분류	분야
1	물류 모니터링 지능화	컨테이너 화물 실시간 위치 및 상태 추적
2	작업자 안전	유해 화학물질 가스 누출 감지
3	물류 데이터 고도화	물류 데이터 융복합 플랫폼
4	항만 설비 안전	실시간 항만 시설물 모니터링 및 예지 정비
5	항만 설비 안전	사람-항만-선박 간 통신·교통 관제
6	작업자 안전	항만 안전 IoT 개발
7	디지털 트윈	항만 원격조정 훈련 콘텐츠 제작
8	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항만	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
9	액체 물류 관리	액체 물류 스마트 모니터링 및 통제 기술
10	기타	해양/물류/항만의 적용 가능한 사업 아이템

□ 우수기업 상금 및 상장 수여

구분	상격 및 상금
1위	울산항만공사 사장상: 1,500,000 원
2위	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상: 1,000,000 원
3위	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상: 500,000원

\* 상기 내용은 평가 결과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\* 본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센터에서 안내한 일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

##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

- 신청자격: 대학(원) 재(휴)학생, 대학(원) 졸업 예비창업자로서 팀 또는 개인

모집 형태	구 성
창업팀	모집 분야 중 택1 하여 예비창업기업으로 자격으로 신청 ※ 발표평가 후 신청한 예비창업기업 단위로 프로젝트 수행
개인	모집 분야 중 택1 하여 개인 자격으로 신청 ※ 발표평가 후 협약 이전까지 팀 구성 또는 개인으로 확정 후 프로젝트 진행

- 우대요건
    - 신청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
    - 최근 3년 이내 창업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
    - 스마트 해양물류 x ICT 멘토링 참여자 또는 이수자
    -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(해양수산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) 입상자
- \*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
□ **신청 제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**

- 울산과학기술원 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금년도 창업지원사업 간의 중복 지원자
- 기존의 창업오디션 기업 대표자는 새로운 기수 대표로 지원 불가하며 기창업아이템으로는 지원 불가
-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위해 휴학 중인 자
-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  - \* 단,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서 회생계획인가 혹은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,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‘제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’ 또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‘재창업 자금지원’ 을 받은 자는 신청 가능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  - \* 단,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,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구분	대상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- [근로기준법]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
- 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배제된 자

-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%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
- 기타 주관기업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### 3 지원내용

- **협약기간:**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**지원내용:** 사업화 자금, 창업 보육 교육 및 멘토링 등
  - **창업지원금: 1,000만원 이내**
    - \* 선정평가를 통하여 창업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수 있음
    - \*\* 창업지원금은 신청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지급될 예정
    - \*\*\* 부가세 제외

#### <창업지원금 비목>

비 목	비목 정의
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(등록은 제외) * 단 출원은 협약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고 관련 자료 제출 필요
지급수수료	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 등)
교육훈련비	참여 연구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인건비	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

- **창업 교육:** 창업기업 설립을 위한 세무, 노무, 지적권 강의를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등
  - 선정된 (예비)창업기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창업 교육 참석 필수
  - 교육은 8회 이상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주간 또는 야간에 진행될 예정
- **멘토링:** BM 및 기술 멘토 배정 및 멘토링 진행
  - MVP, 시장 조사, 고객인터뷰 등

- 창업공간 지원: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, 울산항만공사 창업아지트



- 팀별 회의 및 휴게 가능한 공용공간, 지정 자리 없는 스마트 사무실(복합기 구비)
- 발표평가 준비를 프로젝터 시설 및 개별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 제공

- \*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한하여 '24년 12월까지 사용 가능
- \* 센터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활동(울산항 견학, 네트워킹 간담회, 최종발표 등)에 참가 기업당 최소 1명 이상 참석 필수

## 4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, 기준 준수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  - \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- 선정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,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(체크)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창업 준비 자금은 활동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, 이를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주관기관 승인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.
- 주관기관은 선정자가 창업 준비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

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, 법인전환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## 5 신청 · 접수

□ **신청 · 접수 기간:** 2024. 4. 29. (월) ~ 5. 15.(수)

□ **신청방법**

- 이메일 접수 ([mieun@unist.ac.kr](mailto:mieun@unist.ac.kr))
  -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
(파일명: 창업오디션 8기 신청서류\_예비창업기업명)
  -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(예비창업자)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
- 제출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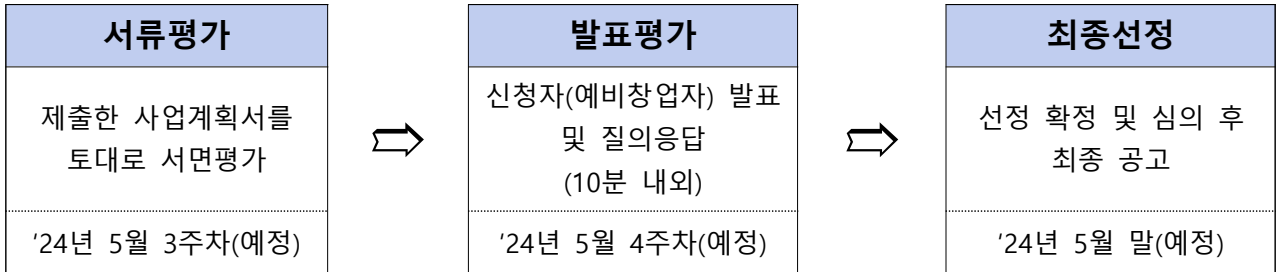
### 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 서류	비고
1. 증빙서류 제출 검토표	별첨1
2. 창업여부 확인서	
3. 창업오디션 신청서	
4. 사업계획서	
5. 대표자 신분증 사본	
6. 참여인력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	
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
8.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	
9. 서약서	
10. 가점 관련 증빙서류(해당 시)	

## 6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:** 총 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〈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(안) 〉



\* 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주관기업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\*\*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 방법

- 서류평가: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자격요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
  -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‘예비창업자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\*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, 신청자격이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
  - \*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명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- 가점항목: 특허·지재권 보유자,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, 신청 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

가점 항목	점수
1)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* 단, 권리권자에 한함, 출원 건은 제외	2점
2) 최근 3년 이내 창업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-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2점	2점
3) 스마트 해상물류 x ICT 멘토링 참가자 또는 이수자 - 2023년도 스마트항만물류 트랙 참여자 또는 이전년도 이수자	2점
4)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(해양수산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) 입상자 - 2022년도 또는 이전년도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	2점

\* 가점 항목 합산 최대 6점 이내 반영

- 발표평가: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, 사업화 계획 적정성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
  - PPT 5장~7장 내외(발표평가 해당자에 한함) 1부

〈 발표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〉

평가항목	세부 내용
사업 참여의지 프로그램 이해도	본 사업의 참여동기, 추진하고 싶은 내용, 필요성 인지 온·오프라인 교육·행사 참여계획 등 사업참여 태도 및 의지 등
창업아이템	아이템(제품/서비스)를 개발 동기, 아이템의 컨셉, 주요고객 및 시장, 타 제품(서비스)와의 차별성, 아이템의 시장성 등
아이템 구체화 및 사업화	아이템(제품·서비스)를 실현할 핵심기술 및 지재권 보유 여부 및 확보 계획, 최소요건(MVP), 시제품 제작 등 아이템 검증 계획 본 프로그램 기간동안의 실현가능한 결과물 등
팀구성	창업팀의 구성, 구성원의 역할 및 핵심역량

- 최종선정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

\* 최종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하여 주관 기업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 일정

※운영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



### □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받은 경우 “형법”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,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, “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”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등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음
-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 금액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-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음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‘신청 제외대상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
### □ 평가 전 유의사항

-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(신청자)가 직접 발표해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 미제출시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함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통

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-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##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 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스마트 항만 물류 지원센터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제가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 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 두절(2주 이상) 및 성실성을 문제로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참여 제한 등 제제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사업자 등록 후 은행 계좌 개설 및 동계좌와 연결된 신용(체크)카드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
- 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
## 8 문의처

#### □ 지원내용, 신청·접수 방법 등 문의 가능

-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
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담당자: ☎ 052-217-3799

✉ [mieun@unist.ac.kr](mailto:mieun@unist.ac.kr)